

가입 · 탈퇴 규정

2025. 02. 13. 개정

2022. 07. 08. 개정

2022. 02. 10. 개정

2021. 12. 0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광진구체육회 (이하 “체육회” 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3. “등급”은 정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을 말한다.<신설 2025. 2. 13.>
4. “승격”은 준회원 단체가 정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2. 13.>
5. “강등”은 정회원단체가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준회원단체가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2. 13.>
6. “제명”은 체육회가 회원단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2. 13.>
- 7.<호개정 2025. 2. 13.> “올림픽, 아시아게임, 전국체전, 대축전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5.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7.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8.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9. 클럽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1.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3. 당해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경기단체에 관한 참고자료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③ 광진구체육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체육단체는 회비규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입회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사회 미승인시 단체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신설 2025. 2. 13.>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광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5개 클럽, 회원 15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동체육회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동체육회 유일의 단체일 것.
2. 동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나 행사가 연 1회 이상 일 것.
3. 위 제2호와 관련하여 동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 및 행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체육회의 정관 및 ‘동체육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동체육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광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5개 클럽, 회원 1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서울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클럽, 회원 6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및 승격)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 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개정 2025. 2. 13.>

<제목 개정 2025. 2. 13.>

제8조(등급 및 가입심의)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는 별도의 등급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③ 심의기구는 가입요건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④ 등급 및 가입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가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단체가 된다.

⑤ 체육회는 등급 및 가입심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7조의3에 따른 직전 평가 결과가 최저등급인 경우

<신설2025. 2. 13.>

2. 회원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신설2025. 2. 13.>

3. 관리단체 해제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신설2025. 2. 13.>

⑦ 제1항에 따른 승격 희망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5. 2. 13.>

1. 승격 신청서 <신설2025. 2. 13.>

2. 종목단체 주요내용(임원 및 클럽장, 가맹단체, 주요대회, 대회개최, 대회실적)
<신설2025. 2. 13.>

3. 종목단체 클럽 및 동호인 명단(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상세)<신설2025. 2. 13.>

4. 25개자치구 종목현황<신설2025. 2. 13.>

⑧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승격요건,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승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2025. 2. 13.>

1. 준회원단체로의 승격: 이사회의 의결<신설2025. 2. 13.>

2. 정회원단체로의 승격: 총회 의결 <신설 2025. 2. 13.>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정관 제10조 의2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할 수 있으며, 제명의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2025. 2. 13.>

② 체육회 정관 제9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체육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정관 제10조

의2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개정2025. 2. 13.>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 ④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구체육회 규정의 적용) 체육회는 회원단체에 한하여 가입 탈퇴 규정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1. 1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목단체 주요내용

가입등급	정회원단체				
창립총회	준회원 00000협회				
회 장	홍길동(00.00.00.), 직업				
조 직	구분	인 원	성 명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장				
가입단체	연번	클럽명	회원수	클럽장	클럽장소
	1				
	2				
	3				
	4				
	5				
	6				
	합계			-	
종목소개					
가맹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서울시체육회 가맹단체	
	정회원단체			정회원단체	
주요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생활체육대축전	
	없음	있음	있음	있음	
대회개최	대회(지역)		대회기간	참가규모	
			2000.00.00	선수 60명 + 관중 40명 =100명	
대회성적 (기타 및 중요대회)	1. 서울시장기 00대회 1위 2.				

25개자치구 00협회현황

연번	구 체육회	00협회 유무	등급	클럽/동호인수	비고
1	강남구체육회	유	정	14/348	
2	강동구체육회				
3	강북구체육회				
4	강서구체육회				
5	관악구체육회				
6	광진구체육회				
7	구로구체육회				
8	금천구체육회				
9	노원구체육회				
10	도봉구체육회				
11	동대문구체육회				
12	동작구체육회				
13	마포구체육회				
14	서대문구체육회				
15	서초구체육회				
16	성동구체육회				
17	성북구체육회				
18	송파구체육회				
19	양천구체육회				
20	영등포구체육회				
21	용산구체육회				
22	은평구체육회				
23	종로구체육회				
24	중구체육회				
25	중랑구체육회				